

발간번호 : 2018년 10월 제1호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과 산업 동향

2018년 10월 <제1호>

안녕하십니까.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진대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금융·물류·의료·공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이 예상되며, 또한 신규 고용창출과 청년 실업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 기술이자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법·제도 미비로 인해 기술력이 탄탄한 우리 기업들은 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에 현지 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합리적인 산업 환경에서 해외기업들은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점점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계시는 차세대 블록체인은 “한국형 블록체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속도·확장성·보안성 등 편리함과 유연함을 갖춘 “한국형 블록체인”이 곧 개발되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시급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창의적인 뜻을 펼치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건강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및 산업 동향」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및 산업 동향」 제1호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을 모아 한눈에 일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및 산업 동향」 제1호가 협회 회원사와 정부당국 및 산업관계자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제도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산업발전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10월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진대제

목 차

I.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동향

II.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동향

III. 암호화폐 & ICO 현황

III - ① 암호화폐

III - ② ICO

별첨. 기업 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안(프랑스)

〈요 약〉

국 가	주 요 이 슈
한국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기업 대상 ICO 실태 조사 나서
	정부,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 6개 추가할 것”
	KT, 김포시에 100억원 규모 블록체인 지역화폐 발행
미국	하원,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팀(FinCEN) 역할 확대에 대한 개정안 통과
	미국 하원, 블록체인 발전 법안 초안 마련
	보스턴 지방 법원 암호화폐 '상품' 분류
중국	상하이 정부, 공급망 혁신에 블록체인 도입 계획 발표
	상하이 정부, 블록체인 기반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출시 예정
	중국 정부, 블록체인에 2016년 이래 35.7억 달러 투자
	선전시, 중앙은행 핀테크 연구소 출범, CBDC 연구 추진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 기업 등록 심사 강화
EU	EU, 재무장관 회의 개최, 암호화폐 관련 규정 제안
프랑스	ICO 신규법안 정부 승인, “전 세계 투자자 유치 목적”
	프랑스 축구클럽 파리생제르망, 자체 암호화폐 ‘팬 토큰’ 출시
영국	재무부·BOE와 암호화폐 리스크 대책 연구 中
러시아	다음달 2차 공청회 개최...암호화폐 관련 규제법안 논의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
브라질	증권위원회, ICO 프로젝트 6가지 판단 기준 제시
베네수엘라	7개 油田(유전) 제공...Petro 활성화 전망

I.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동향

1. 한국

-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기업 대상 ICO 실태 조사 나서
 -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기업들에 '금감원 ICO 실태 점검 질문서'를 공문으로 보내 9월 21일까지 제출을 요구
 - 해당 질문서는 총 52개 질문으로 구성됐으며 내부 주주 현황부터 메인넷 계획,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정부,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
 -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힘

2. 미국

- 하원, FinCEN 개정안 통과(암호화폐 포함)
 - 13일 미국 하원에서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FinCEN 개정안이 통과
 -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FinCEN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업무 범위에 암호화폐가 포함됐고 기타 화폐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신흥기술 분야에도 관여해야 한다고 함

□ 하원, 블록체인 발전 법안 초안 마련

- 미국 하원의원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개발 및 사용을 원하고 있으며, 21일(금) 일련의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수주안으로 의회에 발의할 예정

□ 세입세출위원회 케빈 브레디(Kevin Brady)하원의원, IRS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마련 촉구

- 케빈 브레디(Kevin Brady) 외 5명의 의원이 최근 데이빗 카우터(David Kautter) 美 국세청장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시간이 초과됐다"며 "IRS는 포괄적이고 뚜렷한 암호화폐 관련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짐

□ 보스턴 지방 법원 암호화폐 '상품' 분류

- 미국 보스턴 지방 법원이 "암호화폐는 '상품'에 해당하며, 미국 파생상품 규제기관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밝힘

□ CBOE(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시카고옵션거래소), 연내 이더리움 선물 출시 계획

- CBOE를 운영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 글로벌마켓은 "2018년 말까지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시카고옵션거래소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선보인 바 있음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증권거래위원회), CBOE(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시카고옵션거래소)비트코인 ETF 연기

-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현지시각 9월 20일 CBOE Bitcoin Exchange-Traded Fund(ETF)가 신청한 VanEck SolidX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

3 중 국

- **상해금융보 “거래소, 법률적 보호 받을 수 있어”**
 - 중국 현지 미디어 상해금융보(上海金融報)가 지난해 발생한 암호화폐 관련 법원의 판례를 인용, 중국 국경 내 암호화폐 거래 주체(거래 플랫폼 등)의 이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

- **공업신식화부(공신부) “불법 암호화폐 채굴, 인터넷 질서 위협”**
 -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가 '2018년 2분기 네트워크 보안 위협' 보고서를 통해 "불법 암호화폐 채굴 행위가 인터넷 질서에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힘

4 일 본

-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 기업 등록 심사 강화**
 - 일본 금융청은 개정된 '자금결산법'에 기반해 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 기업에 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암호화폐 거래 기업은 당국 등록을 위해 이전에 제출하던 서류량의 4배에 해당하는 40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함

- **금융청(FSA), 불법 ICO 프로젝트에 최초로 행정처분**
 - 일본 금융청(FSA)이 최초로 공식 채널을 통해 불법 ICO 프로젝트를 운영한 드라군 캐피탈(Dragoon Capital Co.Ltd)을 대상으로 '특례 서비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
 - ※ 행정처분을 통해 드라군 캐피탈은 FSA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고, 일본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이 규정한 투자 서비스 기준에 미달해 '특례 서비스 업체'로 분류됐다고 발표

- 금융청 “거래소,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 오픈 전 협회에 신청해야”
 -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출시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내부 심사결과를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함
 - 협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는다면, 해당 거래 서비스는 진행할 수 없을 것 이라 함

- 금융청, 테크 크런치에 경영 실태조사 착수
 -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Zaif)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거래소의 모기업 테크 크런치(Tech Crunch)의 경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함
 - 금융청은 조사를 통해 테크 크런치가 보고한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

5

E U

- EU, 재무장관 회의 개최, 암호화폐 관련 규정 제안
 - 9월 7~8일 EU는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함
 - EU 회원 국가들은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명확하고 통일된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제안할 예정
 - 각국 재무장관들은 "EU 당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명확한 분석이 있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의결을 하지 않기로 함

-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집행위원회 부위원장 “EU, 암호화폐 분류 및 규제에 초점”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난기류'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EU는 암호화폐를 분류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함

6 프 랑 스

□ ICO 신규법안 정부 승인, “전 세계 투자자 유치 목적”

- 프랑스 정부가 ICO 관련 사업성장혁신 법안(PACTE)을 승인하며, ICO 및 블록체인 산업 규제화에 돌입
 - 프랑스 하원의회가 발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 토큰 발행에 앞서 AMF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암호화폐 및 발행업체의 세부정보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규제 조치는 위험 인식이 팽배한 ICO 시장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승인된 ICO 관련 사업성장혁신 법안은 별첨으로 첨부

7 영 국

□ FCA “재무부 · BOE와 암호화폐 리스크 대책 연구 中”

-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이 규제기관 연례 회의에서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투기로 인해 암호화폐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FCA는 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BOE)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힘

□ 니키 모건(Nicky Morgan) 하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일괄적인 규제 필요”

- 니키 모건(Nicky Morgan) 하원의원은 "유럽 최신 자금세탁 방지법 가이드라인이 영국 법에 통과되어 암호화폐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

□ 재무위원회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필요”

- 영국 재무위원회(UK Treasury Committee)가 디지털 화폐 조사(Digital Currencies inquiry)를 위한 ‘암호화 자산(crypto-assets)’ 관련 보고서를 발표, 암호화폐 시장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

8 러시아

□ 러시아, “암호화폐 발전 전략 선회...속도전 안 한다”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최근 모스크바 금융 포럼에서 "러시아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국가 정책에 힘입어 빠른 성장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제 전략을 선회해 발전 속도를 늦출 예정이다"라며 "앞서가는 다른 국가들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으면 실패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두마 의회, 다음달 2차 공청회 개최...암호화폐 관련 규제법안 논의

- 러시아 두마 의회가 내달 제2차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를 개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9 멕시코

□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

- 멕시코 중앙은행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중앙은행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금세탁 등 암호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 밝힘

10 브라질

□ 증권위원회, ICO 프로젝트 6가지 판단 기준 제시

- 브라질 증권위원회(CVM)이 암호화폐를 악용한 자금 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
 - 1.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졌는지 여부와 무료 배포 여부 확인.
 - 2. 해당 기술의 공개 여부와 투명성을 갖췄는지 여부 모든 이용자의 방문과 검증을 허용하는지 여부 확인
 - 3. 이익에 상충하는 로드맵 일정의 존재 여부. 암호화폐 발행인 및 특정 조직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4. 암호화폐의 거래 유동성 확인
- 5. 네트워크의 성질, 컨센서스, 검증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 확인
- 6. 개발팀 이력과 그들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전문성 여부 확인

11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 대통령, 7개 油田(유전) 제공...Petro 활성화 전망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원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7개 유전(油田)을 14개 업체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결정을 통해 유통되는 50억 배럴 규모의 원유 공급량은 암호화폐 페트로(Petro) 사용률을 크게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페트로 국제 거래에 사용할 것”

- "정부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오는 10월 1일부터 국제 거래에 사용할 것"이라며 "전 세계 상품 교환 및 구매, 환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힘

II.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동향

1. 한국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 6개 추가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일 "정부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올해 6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리면서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계획"이라 밝힘
 - KISA 관계자는 "공공분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2월쯤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예산도 공공과 민간을 합해 100억원 이상 투입될 전망"이라고 함

- KT, 김포시에 100억원 규모 블록체인 지역화폐 발행
 - 김포시와 KT, KT 엠하우스가 약 100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KT와 KT 엠하우스의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김포시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음
 - 김포시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

- 카카오의 블록체인 '클레이튼'...한재선 대표 "실생활 서비스 내놓을 것 “
 -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오는 10월 테스트넷 론칭에 이어 내년 1·4분기 메인넷을 공개예정이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앱(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을 구성해 나갈 예정

- 네이버,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 라쿠텐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잇따라 가상화폐 발행
 -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인 라인은 지난 4일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링크’를 선보임

□ 삼성SDS, 수출통관에 세계 첫 블록체인 도입

- 삼성SDS는 관세청과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협약을 체결
 -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수출통관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는 관세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기업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문서 위조가 불가능해지고 현재 통관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함

2 미 국

□ 와이오밍 주정부, 부동산 산업에 블록체인 도입 검토

- 와이오밍 주정부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현지 부동산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중
 - ※ 블록체인을 통해 현지 부동산 관련 파일 및 문서를 통합하고자 함

□ 세계은행,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채권을 출시

- 매년 세계은행은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억~6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예정

□ 월스트리트 참여로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 거래소 가격차 4.5%→0.1%로 감소

-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간 가격차가 4.5%에서 0.1%로 감소
 -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으며, 뉴욕증시 소유업체 ICE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암호화폐 플랫폼 백트(Bakkt)를 준비 중

□ 나스닥 親암호화폐 거래소 인수 추진

- 나스닥은 디지털 자산 거래 솔루션 제공업체인 시노버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암호화폐 상장 가능성을 드러냄
 - 나스닥의 아데나 프리드먼(Adena Friedman) CEO는 "시노버의 기술력과 우리의 시장 기술(Market Technology) 비즈니스가 결합하면 나스닥 내

가장 빠른 성장세의 상품 분야가 탄생할 것이다. 글로벌 자본 시장은 계속 진화 중이며, 다양한 산업군 내 새로운 시장들은 빠른 변화 추세를 담아낼 기술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우리는 새로운 영역 확장에 나섰다"라고 함

□ 월마트, 푸른잎 줄기채소 생산·유통 과정 블록체인으로 추적

- 월마트가 내년 9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매장에서 파는 채소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추적
 - 푸른잎 줄기채소를 납품하는 농장과 공급 업체들이 월마트가 IBM과 함께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힘

3 중 국

□ 상하이 정부, 공급망 혁신에 블록체인 도입 계획 발표

- 상하이 정부는 전국 공급망 혁신 시범기업 100곳 및 글로벌 공급망 기업 10곳을 육성해 핵심 산업의 공급망 경쟁력을 높여 상하이를 글로벌 자원 배분의 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
 - 공급망의 각 단계를 통합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신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

□ 중국 정부, 블록체인에 2016년 이래 35.7억 달러 투자

- 블록체인 스타트업 네오블록체인의 개발팀 멤버 Miryam Amsili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35억 7,0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함

□ 선전시, 중앙은행 핀테크 연구소 출범, CBDC 연구 추진

- 선전시 정부는 중앙은행 핀테크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 및 핀테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연구할 예정

- **상하이 정부, 블록체인 기반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출시 예정**
 - 상하이 정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상하이 시장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출시하여 데이터의 투명성 및 보안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계획을 밝힘

- **민정부, 기부 등 공익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도입**
 - 중국 민정부가 '인터넷+사회조직 행동 방안(2018-2020)'을 발표하며 기부금 내역 추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해 위조가 불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정보 전달 능력 강화와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 함

4

일 본

- **쓰쿠바 시, 마이넘버 제도에 블록체인 결합**
 - 이바라키 현(茨城縣) 쓰쿠바 시(つくば市)가 일본에서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인 마이넘버(My Number)와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새로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함

- **이시카와현 가가시,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에 블록체인 도입**
 -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 스마트밸류(Smart Value)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가시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내년 4월까지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며, 회원 정보 관리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등록 절차를 모두 생략한다고 함

5

스 위 스

- **UBS, '유틸리티 결제 코인' 출시 예정**
 - 스위스 은행인 UBS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지불 시스템인 '유틸리티 결제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 토큰은 중앙은행에서 현금으로 전환될 것이며, 프로젝트에는 바클레이와 HSBC도 참여

6 프 랑 스

- 프랑스 축구클럽 파리생제르망, 자체 암호화폐 ‘팬 토큰’ 출시
 -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지난해 우승팀 파리생제르망(PSG)이 전 세계 팬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예정
 - 파리생제르망(PSG)은 암호화폐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클럽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결정에 팬들을 참여시키는 유용한 매개체로 토큰을 활용해 나갈 예정

7 몰 타

- 블록체인 라이선스 출시 발표... ‘산업 확장 본격화’
 - 조셉 머스캣(Joseph Muscat) 몰타 총리가 다국적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 Price waterhouse Coopers)와 협력해, 오는 11월 블록체인 라이선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 조셉 머스캣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관료주의 계층을 근절시킬 것이다. 이에 수반하는 리스크 또한 감수하고 있다며 또한 디지털 플레이어들이 몰타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승인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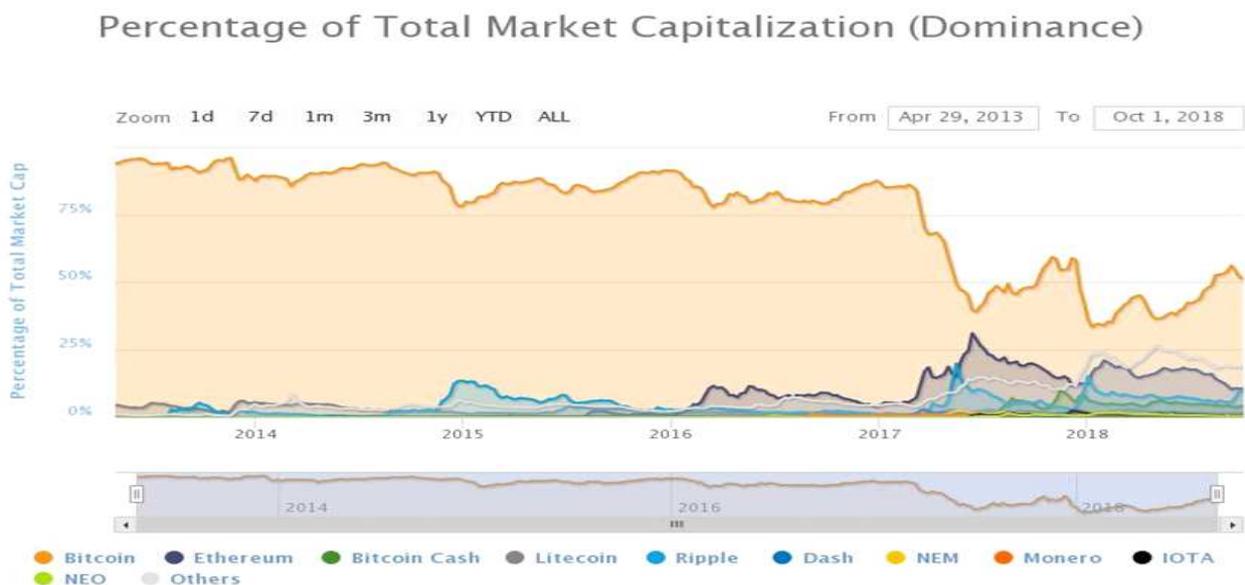
III. 암호화폐 & ICO 현황

1 암호화폐

□ 2018년 10월 1일 기준 암호화폐 거래의 51.31%는 Bitcoin, Ethereum 10.67%, Ripple 10.36%의 시장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암호화폐 시장 거래 규모

2018년 10월 1일 기준



출처: 코인마켓캡(<https://coinmarketcap.com/charts/>)

[표 1] 암호화폐 시장 거래 규모

암호화폐	시장 비율
Bitcoin	51.31%
Ethereum	10.67%
Bitcoin Cash	4.14%
Litecoin	1.60%
Ripple	10.36%
Dash	0.70%
NEM	0.39%
Monero	0.86%
IOTA	0.71%
NEO	0.55%
Others	18.70%

출처: 코인마켓캡(<https://coinmarketcap.com/charts/>)

III. 암호화폐 & ICO 현황

□ 2018년 10월 10일 기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약 2,000여개 이상이며,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219,796,617,374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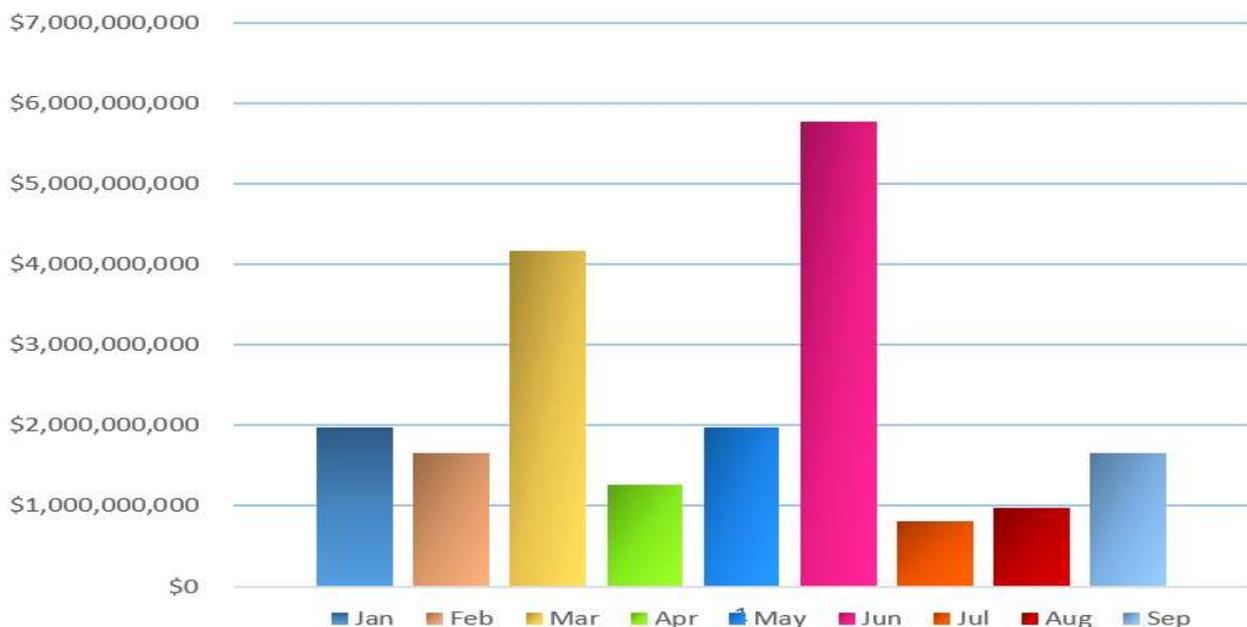
[표 2]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Top 10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가총액	가격
Bitcoin	\$114,945,719,776	\$6,639.06
Ethereum	\$23,345,914,270	\$227.83
Ripple	\$19,146,157,605	\$0.47
Bitcoin Cash	\$9,004,331,496	\$517.68
EOS	\$5,352,131,789	\$5.91
Stellar	\$4,585,699,070	\$0.24
Litecoin	\$3,440,475,444	\$58.66
Cardano	\$2,236,522,836	\$0.09
Monero	\$1,872,370,074	\$113.65
TRON	\$1,713,836,611	\$0.03

출처: 코인마켓캡(<https://coinmarketcap.com/charts/>)

2 I C O

<그림 2> 2018년 ICO 모집 금액(월별)



출처: <https://www.icodata.io>

III. 암호화폐 & ICO 현황

- 2018년 1월에서 2018년 9월까지 진행된 ICO 프로젝트는 약 800여개이며, 모집금액은 \$20,275,374,097 모집됨

[표 2] ICO 현황

월	ICO 프로젝트 수	ICO 모집금액
Jan	88	\$1,975,832,821
Feb	87	\$1,660,013,613
Mar	78	\$4,173,112,271
Apr	118	\$1,268,948,460
May	141	\$1,981,408,851
Jun	95	\$5,775,748,823
Jul	86	\$809,577,207
Aug	65	\$981,062,378
Sep	51	\$1,649,669,673
합계	809	\$20,275,374,097

출처: <https://www.icodata.io>



별첨 기업 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안

【원문】

N° 1088

ASSEMBLE NATIONALE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QUINZIME LGISLATURE

Enregistré à la Présidence de l'Assemblée nationale le 19 juin 2018.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Procédure accélérée)
(Renvoyé à une commission spéciale)
PRÉSENTÉ
au nom de M. Édouard PHILIPPE,
Premier ministre,
par M. Bruno Le Maire,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EXPOSÉ DES MOTIFS

Mesdames, Messieurs,

Ce projet de loi vise à relever un défi majeur, celui de la croissance des entreprises, à toute phase de leur développement, pour renouer avec l'esprit de conquête économique. Cela passe notamment par une transformation du modèle d'entreprise français pour l'adapter aux réalités du 21^e siècle.

Il s'agit tout d'abord de faciliter la création d'entreprises, en limitant au strict nécessaire les barrières à l'entrée, en limitant le coût de création des entreprises et en simplifiant au maximum les formalités administratives. La croissance des entreprises ne doit pas être entravée par des effets de seuil excessifs et par un environnement réglementaire trop complexe et pénalisant par rapport aux autre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Enfin, les entrepreneurs doivent pouvoir rebondir plus facilement, en permettant à leur entreprise d'être liquidée et redressée plus rapidement, de manière peu coûteuse et non stigmatisante.

Le financement en fonds propres, moteur de l'innovation et de la croissance des entreprises françaises, doit être développé. Les entreprises françaises ont en effet besoin de capitaux et d'actionnaires de long terme pour se lancer à la conquête de marchés

étrangers, pour investir dans l'innovation, dans la modernisation de leur outil productif et dans la formation et les compétences de leurs salariés. Dans le prolongement des mesures fiscales déjà adoptées en faveur de l'investissement et de l'abaissement du coût du capital, le plan d'action contribuera à développer les sources d'épargne longue pour le financement en fonds propres et la consolidation du capital des entreprises françaises, et à faciliter l'accès aux marchés du financement pour toutes les entreprises, en mobilisant tous les leviers disponibles.

Les salariés seront ainsi notamment mieux associés aux fruits de la croissance des entreprises, avec une nouvelle ambition pour les mécanismes permettant un partage des profits à travers notamment, la participation, l'intéressement, l'épargne salariale et l'actionnariat salarié.

Afin de construire ce plan d'action, une large consultation de l'ensemble des parties prenantes a été organisée. Six binômes, composés d'un parlementaire et d'un chef d'entreprise, ont également été constitués. Ils ont eu la charge d'organiser des entretiens et ateliers avec tous types d'acteurs, pour varier les points de vue et formuler des propositions au plus près des préoccupations des Français. Lancée le 23 octobre 2017, cette première phase de consultation s'est achevée le 10 décembre 2017. Les propositions issues de ce travail ont été soumises à une large consultation publique en ligne à partir de janvier 2018 pour une durée d'un mois.

Le présent projet de loi s'est appuyé sur ces différentes contributions.

Le chapitre 1er prévoit un ensemble de mesures visant à libérer les entreprises, pour en faciliter la création, mieux accompagner leur croissance, faciliter le rebond des entreprises et des entrepreneurs et rendre les transmissions d'entreprises plus fluides.

Sa section 1 vise à rendre la création d'entreprises plus facile et à en réduire le coût.

...

L'article 26 est relatif à la création d'un régime français des offres de jetons. Les « offres initiales de jetons » (« Initial Coin Offering » ou « Initial Token Offering » en anglais), c'est-à-dire les levées de fonds via un dispositif d'enregistrement partagé (notamment au moyen de la technologie dite « blockchain » ou « chaîne de blocs ») via l'émission de « jetons » numériques, se sont développées de manière spectaculaire au cours de l'année 2017. Cet essor dynamique, conforté sur les premiers mois de l'année 2018, traduit l'attrait de ce nouveau mode de financement et d'investissement, en particulier au sein de l'écosystème blockchain mais, plus largement, pour les entreprises innovantes qui souhaitent attirer de nouvelles catégories d'investisseurs ou de clients, selon des modalités inédites.

Ces opérations échappent néanmoins pour l'instant à un cadre juridique clair, dans la mesure où, au regard du droit français et du droit européen, les « jetons » ainsi émis peuvent être qualifiés juridiquement de différentes manières selon leurs caractéristiques propres. En particulier, la plupart de ces jetons ne répondent pas aux éléments de définition des titres financiers. Cette situation a pour avantage de laisser libre cours à l'innovation. Elle a néanmoins pour inconvénient de mettre sur le même plan tout type d'émetteur et de projet, sans fournir aux souscripteurs de jetons des moyens suffisants pour distinguer les offres sérieuses de celles abusives, et les acteurs qui mettent en œuvre des diligences en matière d'information, d'identification et de connaissance du client, de ceux qui ne respectent aucune règle.

Dans l'attente de règle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nécessaires sur ces sujets par nature transnationaux, il apparaît souhaitable, pour mieux protéger les acquéreurs de jetons et les porteurs de projets « légitimes », de permettre à l'AMF de délivrer un visa aux acteurs qui souhaiteraient émettre des jetons destinés notamment au marché français pour le financement d'un projet ou d'une activité, sous réserve qu'ils respectent certaines règles de nature à éviter des abus manifestes et à informer et protéger l'investisseur. L'AMF se verrait ainsi confier le soin d'examiner les documents élaborés par les émetteurs de jetons en amont de leur offre (« white paper »). Elle pourrait en outre exiger que les émetteurs se dotent d'un statut de personne morale établie ou immatriculée en France, mettent en place un mécanisme de séquestre des fonds recueillis, ou tout outil d'effet équivalent, et un dispositif d'identification et de connaissance du client. Les acteurs ainsi labellisés figureraient sur une « liste blanche », sur laquelle l'AMF communiquerait auprès du grand public, qui identifierait les acteurs qui respectent ces règles et leur fournirait un gage important de respectabilité auprès des souscripteurs. Les jetons présentant les caractéristiques d'un titre financier resteraient néanmoins soumis au régime de l'offre au public de titres financiers.

...

Article 26

Le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est ainsi modifié :

- 1° Au 4° de l'article L. 341-1, au 2° du I de l'article L. 500-1 et au 4° du I de l'article L. 541-1,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0-1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1-1 ;
- 2° L'intitulé du titre V du livre V est complété par les mots : « et émetteurs de jetons » ;
- 3° Au titre V du livre V, il est créé un chapitre Ier intitulé « Intermédiaires en biens divers » comprenant les articles L. 550-1 à L. 550-5 et ceux-ci deviennent les articles L. 551-1 à L. 551-5 ;

- 4° Au V de l'article L. 550-1, qui devient l'article L. 551-1 :
- a) Au premier alinéa, la référence aux articles L. 550-2, L. 550-3, L. 550-4 et L. 550-5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aux articles L. 551-2, L. 551-3, L. 551-4 et L. 551-5 ;
 - b) Au second alinéa,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0-3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1-3 ;
- 5° À l'article L. 550-2, qui devient l'article L. 551-2,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0-1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1-1 ;
- 6° Au sixième alinéa de l'article L. 550-3, qui devient l'article L. 551-3,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0-1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1-1 ;
- 7° Le titre V du livre V est complété par un chapitre II ainsi rédigé :

« Chapitre II

« Émetteurs de jetons

« **Art. L. 552-1.** - Est soumis aux obligations du présent chapitre tout émetteur qui procède à une offre au public de jetons et qui sollicite un visa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552-4 et suivants.

«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s'appliquent à toute offre de jetons qui n'est pas régie par les livres Ier à IV, le chapitre VIII du titre IV du présent livre ou le chapitre Ier du présent titre.

« **Art. L. 552-2.** - Aux fins du présent chapitre, constitue un jeton tout bien incorporel représentant, sous forme numérique, un ou plusieurs droits, pouvant être émis, inscrits, conservés ou transférés au moyen d'un dispositif d'enregistrement électronique partagé permettant d'identifi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e propriétaire dudit bien.

« **Art. L. 552-3.** - Une offre au public de jetons consiste à proposer au public, sous quelque forme que ce soit, de souscrire à ces jetons.

« Ne constitue pas une offre au public de jetons l'offre de jetons ouverte à la souscription par un nombre limité de personnes, fixé par le règlement général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gissant pour compte propre.

« **Art. L. 552-4.** - Préalablement à toute offre au public de jetons, les émetteurs peuvent solliciter un visa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 Les émetteurs établissent un document destiné à donner toute information utile au public sur l'offre proposée et sur l'émetteur.

« Ce document d'information et les communications à caractère promotionnel relatives à l'offre au public présentent un contenu exact, clair et non trompeur et permettent de comprendre les risques afférents à l'offre.

« Les modalités de la demande de visa préalable, les pièces nécessaires à l'instruction du dossier et le contenu du document d'information sont précisés par le règlement général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 **Art. L. 552-5.** -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vérifie si l'offre envisagée présente les garanties exigées d'une offre destinée au public et notamment que

l'émetteur des jetons :

« - est constitué sous la forme d'une personne morale établie ou immatriculée en France ;

« - met en place tout moyen permettant le suivi et la sauvegarde des actifs recueillis dans le cadre de l'offre.

«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examine le document d'information, les projets de communications à caractère promotionnel destinées au public postérieurement à la délivrance du visa et les pièces justificatives des garanties apportées. Elle appose son visa sur le document d'information selon les modalités et dans le délai fixés par son règlement général.

« **Art. L. 552-6.** - Si, après avoir apposé son visa,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constate que l'offre proposée au public n'est plus conforme au contenu du document d'information ou ne présente plus les garanties prévues à l'article précédent, elle peut ordonner qu'il soit mis fin à toute nouvelle souscription ou émission, ainsi qu'à toute communication à caractère promotionnel concernant l'offre, et retirer son visa dans les conditions précisées par son règlement général.

« **Art. L. 552-7.** - Les souscripteurs sont informés des résultats de l'offre et, le cas échéant, de l'organisation d'un marché secondaire des jetons selon des modalités précisées par le règlement général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 ;

8° À l'article L. 573-8 :

a) Au premier alinéa, la référence aux articles L. 550-3 et L. 550-4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aux articles L. 551-3 et L. 551-4 ;

b) Au deuxième alinéa,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0-5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1-5 ;

c) Au troisième alinéa,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0-4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1-4 ;

9° Au 7° du I de l'article L. 621-5-3, la référence aux articles L. 550-1 à L. 550-5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aux articles L. 551-1 à L. 551-5 ;

10° Après le I de l'article L. 621-7, il est inséré un I bis ainsi rédigé :

« I bis. - Les règles qui s'imposent aux émetteurs de jetons, au sens du chapitre II du titre V du livre V du présent code. » ;

11° Au 8° du II de l'article L. 621-9,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0-1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à l'article L. 551-1 ;

12° Le e du II de l'article L. 621-15 est complété par un alinéa ainsi rédigé :

« - d'une offre de jetons pour laquelle l'émetteur a sollicité le visa prévu à l'article L. 552-4. »

【번역본】

제1088호

하원

1958년 10월 4일 헌법에 따른 제15대 하원

2018년 6월 19일 하원 의장단에 법률안 접수

기업 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안

(긴급처리 절차)

(특별위원회에 회부)

법률안 제출자: 총리 에두아르 필립(Édouard PHILIPPE) 이름으로 재정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가 제출

법률안 발의 배경 설명

의원 여러분,

이 법률안은 기업들이 여러 발전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주요 성장과제를 경제발전 방안과 연계하여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제는 특히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춘 프랑스 기업 모델의 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무엇보다 기업의 진입장벽 및 설립비용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설립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높은 진입장벽과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리한 규제환경으로 인하여 방해받아서가 아니라 될 것입니다. 요컨대, 기업가들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더 신속하게 기업을 청산 및 재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그들이 좀 더 쉽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프랑스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원동력이 되는 자기자본 조달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에 투자하며, 생산 도구를 현대화하고 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 조달 및 투자자들의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투자 및 자본비용 경감을 위하여 이미 채택된 세제조치의 연장선에서 행동계획은 프랑스 기업들의 자기자본 조달 및 자본 안정화를 위한 장기저축 재원을 개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들이 자금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특히 자본참여, 이익배분, 근로자저축, 근로자 주주 등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통하여 새

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업성장의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한층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자 이해관계자 간의 광범위한 협의체가 조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과 기업 대표자로 구성된 6쌍의 파트너십 협의체제도 구성되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프랑스 국민의 실질적인 관심사와 가장 밀접한 제안을 하고자 각 분야 주체들과의 면담 및 워크숍 조직을 담당하였습니다. 첫 번째 협의단계는 2017년 10월 23일에 착수되어 2017년 12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하여 수립된 제안은 2018년 1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 공개됨으로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제I장은 기업설립 촉진, 기업성장을 위한 효율적 지원,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기업가들의 회생 지원, 한층 유연해진 사업체 이전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율권 제공을 목표로 하는 모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I장제1절은 기업설립 촉진 및 그 비용절감에 관한 것입니다.

(중략)

제26조는 프랑스 가상화폐공개(offres initiales de jetons) 제도의 신설과 관련됩니다. "가상화폐 공개(영어로, "Initial Coin Offering" 또는 "Initial Token Offering")", 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근거로 하는 분산원장기술(dispositif d'enregistrement partagé)(특히 "블록체인(영어로, "blockchain)") 기술을 이용한)을 통한 자금 모집은 2017년 들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더욱 강화된 이 역동적인 발전은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및 투자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근거로 하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특히 블록체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 또는 고객 유치를 갈구하는 혁신기업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현재 프랑스법과 유럽법의 관점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된 "가상화폐"는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법적인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가상화폐는 유가증권을 정의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이 혁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방식은 가상화폐 구매자들에게 진짜와 허위 가상화폐공개에 대한 구별과 고객의 정보, 신원 및 지식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거래를 하는 주체들과 어떠한 규칙도 따르지 않는 주체들을 구분할 만한 충분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채 모든 유형의 가상화폐 발행자와 발행계획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국가적인 성격으로 이 주제에 필요한 유럽연합규칙 및 국제규칙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 매수자들과 "합법적인" 가상화폐 개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청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이 특히 사업 또는 활동 부문의 프랑스 자금조달 시장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원하는 주체들을 승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승인은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된 명백한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특정 규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청은 가상화폐 발행 전에 발행자가 수립한 문서("

백서(white paper)")에 대한 심사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시장청은 발행자들에게 프랑스에 설립 또는 등록된 법인 자격을 취득하거나 모집된 자금을 기탁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도구와 고객의 신분 및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주체들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될 것이며, 금융시장청은 이 화이트리스트를 통하여 이 규칙을 준수하는 주체들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보증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닌 가상화폐는 유가증권을 일반에 제공하는 데 따른 체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략)

제26조

금융통화법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 1° 제L341-1조제4호, 제L500-1조제I항제2호, 제L541-1조제I항제4호에서, 제L550-1조를 제L551-1조로 교체한다.
- 2° 제V권제V편의 제목을 “및 가상화폐 발행자” 로 보완한다.
- 3° 제V권제V편에서, 제L550-1조부터 제L550-5조까지를 포함한 제I장 “다양한 자산의 중개” 를 추가하고, 이 조항들은 제L551-1조부터 제L551-5조까지가 된다.
- 4° 다음 각 목과 같이 제L551-1조는 제L550-1조제V항이 된다.
 - a) 제1문단에서, 제L550-2조·제L550-3조·제L550-4조·제L550-5조를 제L551-2조·제L551-3조·제L551-4조·제L551-5조로 교체한다.
 - b) 제2문단에서, 제L550-3조를 제L551-3조로 교체한다.
- 5° 제L551-2조가 되는 제L550-2조에서, 제L550-1조를 제L551-1조로 교체한다.
- 6° 제L551-3조가 되는 제L550-3조제6문단에서, 제L550-1조를 제L551-1조로 교체한다.
- 7° 제V권제V편을 다음 제II장으로 보완한다.

제II장 가상화폐 발행자

제L552-1조. 대중을 대상으로 가상화폐공개를 하고 금융시장청의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발행자는 제L552-4조 및 그 다음 조항들의 조건에 따라 이 장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장의 규정은 제I권부터 제IV권까지, 이 권 제IV편제VIII장 또는 이 편 제I장에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가상화폐공개에 적용된다.

제L552-2조. 이 장의 목적상, 가상화폐는 직간접적으로 자산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 분산원장기술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가상화폐를 발행, 등록, 보유 또는 양도할 수 있는 디지털 형식의 모든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L552-3조. 가상화폐공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중에게 이 가상화폐 구매를 신청하도록 제안하는 행위이다.

금융시장청의 일반규칙으로 정한 제한된 수로 가입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제공은 가상화폐공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L552-4조. 가상화폐 발행자들은 모든 가상화폐공개 이전에 금융시장청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상화폐 발행자들은 발행정보 및 발행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목적의 문서를 수립한다.

이 정보문서와 가상화폐 공개와 관련된 홍보 성격의 통지문은 가입자가 이 공개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 없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사전승인 신청방식, 서류심사에 필요한 문서 및 정보문서 내용은 금융시장청의 일반규칙으로 정한다.

제L552-5조. 금융시장청은 계획된 가상화폐공개가 공개에 필요한 보증과 특히 가상화폐 발행자에게 요구되는 다음 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프랑스에 설립 또는 등록된 법인 자격의 취득
- 가상화폐공개를 통하여 모집된 자산에 대한 감사 및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의 제공

금융시장청은 정보문서, 승인을 받은 후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홍보 성격의 통지문 초안, 제시된 보증에 대한 증빙서류를 심사한다. 금융시장청은 일반규칙으로 정한 방식 및 기간에 따라 정보문서에 승인을 부여하는 관인을 날인한다.

제L552-6조. 승인을 부여하는 관인 날인 후에 일반에 제안된 가상화폐공개가 정보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에 규정된 보증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금융시장청이 확인한 경우, 이 금융시장청은 가상화폐의 신규 가입 또는 발행과 가상화폐공개와 관련된 홍보 성격의 통지문 발송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이 위원회는 일반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L552-7조. 가입자는 금융시장청의 일반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가상화폐 공개 결과, 필요한 경우에, 가상화폐를 위한 2차 시장의 조직을 통보받는다.”

8° 제L573-8조

- a) 제1문단에서, 제L550-3조 및 제L550-4조를 제L551-3조 및 제L551-4조로 교체한다.
- b) 제2문단에서, 제L550-5조를 제L551-5조로 교체한다.
- c) 제3문단에서, 제L550-4조를 제L551-4조로 교체한다.

9° 제L621-5-3조제I항제7호에서, 제L550-1조부터 제L550-5조까지를 제L551-1조부터 제L551-5조까지로 교체한다.

10° 제L621-7조제I-1항 뒤에, 다음 제I항의2를 삽입한다.

“I의2. 이 「금융통화법전」 제V권제V편제II장에 따라 가상화폐 발행자에게 요구되는 규칙”

11° 제L621-9조제II항에서, 제L550-1조를 제L551-1조로 교체한다.

12° 제L621-15조제II항을 다음 한 문단으로 보완한다.

“- 발행자가 제L552-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상화폐공개”